

대구예술대학교 국제교류원 운영규정

(제정 2024.03.25. 교무위원회)

(개정 2024.06.25. 교무위원회)

(개정 2024.09.23. 교무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국제교류원 운영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국제교류원(이하 "교류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본 교류원은 이 대학교의 국제교류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교류원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 및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협약에 관한 사항
3. 외국대학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과의 학점 교류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3조(원장 및 책임교수) ① 교류원에는 국제교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외부인사를 임용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4.06.25.)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류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교류원에는 원장 이외에 책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책임교수는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원장 부재시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교직원 및 자문위원) ① 국제교육원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업무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국제교류운영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교류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개정 2024.9.23.)

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제교류원 운영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외국대학과의 국제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3. 국외 대학과의 학술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외 유학생 수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기타

제9조(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외국인 유학생 홍보, 관리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경비
2. 그 밖에 본 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업무추진비 및 경비

제10조(직무의 위탁) 원장은 국제교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제규정, 출입국관리법,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24.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